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

- 제249회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
심 의 자 료

□ 일 시 : 2016. 5. 23.(월)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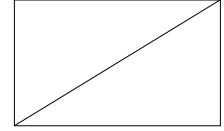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제249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 심의안건 : 총 2건(조례공포안 1, 규칙안 1)

연번	의안 번호	제출부서	심 의 안 건	비 고
1	29	교육지원과 (오현정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	제 정
2	30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 부 개 정



의안번호	제29호
의결 년월일	2016. 5. 23. (제249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

제출자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제출년월일	2016. 5.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 (오현정 의원 발의)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창의·인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안 제3조)
- 나. 창의·인성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차별금지의 규정(안 제4조)
- 다. 창의·인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 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교육기본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진로교육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광진구청장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다.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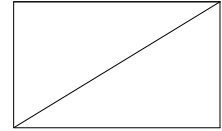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0호
의결 년월일	2016. 5. 23. (제249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출년월일	2016. 5.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기준용어를 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주요항목 지출금액 → 정책사업 지출금액

나. 여성발전기금의 명칭 변경(안 제52조)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협의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2. ~ 5. 12.) 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6조”을 “제9조” 으로 한다.

제6조 중 “제8조”를 “제12조”로, “주요항목”을 “정책사업”으로 한다.

제8절의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 으로 한다.

제52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 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제3호의1 및 제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제6호, 제6호의1, 제6호의2, 제9호, 제10호, 제10호의1,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6조에 따라 -----</p> <p>1. -----</p> <p>2. -----</p>	<p>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9조에 따라 -----</p> <p>1. -----</p> <p>2. -----</p>
<p>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p> <p>②-----</p>	<p>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p> <p>②-----</p>
<p>제8절 <u>여성발전기금</u></p>	<p>제8절 <u>양성평등기금</u></p>
<p>제52조(지원대상) 광진구 <u>여성발전기금</u>의 지원대상은-----</p> <p>1.-----</p> <p>2.-----</p>	<p>제52조(지원대상) 광진구 <u>양성평등기금</u>의 지원대상은-----</p> <p>1.-----</p> <p>2.-----</p>